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70호

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

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‘적합’ 판정기준을 강화하고, 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검사 판정기준 강화(안 제6조제3항)

-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판정기준의 세부항목 강화

나. 재검사 기간 제한(안 제7조제3항)

- 자격유지·의료적성검사의 3회차 검사부터는 재검 제한기간을 연장30일) 하고, 4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검사 시행

다. 재검사 횟수 산정(안 제7조제4항)

- 재검사 횟수 산정을 위해 의료적성검사 횟수 포함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교통서비스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자우편 : paksb3033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8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「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」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(전화 044-201-382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